

##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 ㄴ  
- 결산 업데이트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생략	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	결산 업데이트	생략	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 인력	결산 업데이트	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##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자투자신탁[H](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업데이트
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서식변경	가. 자투자신탁(생략) (신설)	가. 자투자신탁(현행과 같음) 나. 모투자신탁 (기존 제 2 부. 별첨 1.4.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내용 이동)
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서식변경	(신설)	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]  (기존 제 2 부. 별첨 1.5.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내용 이동)
제 2 부. 12. 다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	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)	①상장주식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(해외 증권시장 포함)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②(생략) ③장내파생상품: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) 등이 발표하는 가격	①상장주식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(해외 증권시장 포함)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  ②(현행과 같음) ③장내파생상품: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)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

		<p>④~⑧ (생략)         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: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<u>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</u></p> <p>⑩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</p>	<p>④~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: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<u>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</u></p> <p>⑩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<u>전날의 최종시가</u></p>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생략	<p>기타비용, 총보수비용, 증권거래, 동종유형 비용 등</p> <p>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제 2 부.14.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         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         납입요건: 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세액공제: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</p>	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         [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]          납입요건: 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         ※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“전환금액”)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</p> <p>세액공제:         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        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        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</p>

		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,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(2015.1.1.이후 납입분)은 추가 세액공제</p>	<p>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※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%(300 만원 한도) 추가 세액공제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</p> <p>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]</p> <p>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</p> <p>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: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
--	--	---	--

		<p>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	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※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</p> <p>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“전환 금액”)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,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)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.</p> <p>- 종합 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</p>
--	--	---	--

			적용합니다.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제 2 부. 별첨 1.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서식 변경	생략	(삭제)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생략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생략	<b>라. 운용자산규모</b>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